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9 | 2024.04.02 (2024.03.25~03.3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25~03.31)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제23차 민생토론회가 3/25(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제24차 민생토론회는 3/26(화)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 충북이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3/28)하여 ①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②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③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④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⑤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더 체감될 수 있도록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하여 우리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강조하며,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경제·사회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안 사회 등 4대 중점 투자 기준을 밝힌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동의를결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담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발의되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관계부처 합동) ... 6
- 제2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관계부처 합동) ... 7
- 비상경제장관회의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 11
- 비상경제장관회의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13
- 비상경제장관회의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16
- 비상경제장관회의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19
- 비상경제장관회의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 21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기획재정부) ... 2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 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2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2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29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29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3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3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3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3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3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3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3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3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 3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특허청) ... 35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3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3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3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25~03.31)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 [소비재 · 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 [해외 규제]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노동] 직장 내 갈등 관리, 인지와 예방이 우선이다
- [통상관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행안부, 국토부 등)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2024-03-25
---------------------------------	--	-------------------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도시 조성, 공공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용인·수원·고양·창원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
-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
-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 -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히 건설
-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개발 구상>



※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③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간 약 45km) 조속히 추진

-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 확장
-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적극 추진
- GTX-A 구성역 개통
-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④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 강조

-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 지원
-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 대폭 이관

관계부처 합동
(과기부, 복지부 등)

제2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 게임체인저 기술인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2024-03-26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 충북이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됨

주요 내용으로는

(1)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①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동력, 첨단바이오

- 최근 전통적 바이오 기술에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바이오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임
-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로(한화 약 2,500조 원)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②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주요 방향

- 최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AI를 무기로 첨단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할 계획임
-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계획임
-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함

③ 첨단바이오 투자 및 정책 목표

-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임

(2)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① K-바이오 스퀘어 조성

- 충북은 1994년 오송 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바이오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으며, 2010년에는 식약처·질병청 등 보건의료 정책기관도 이전하여 국내 바이오 대표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함
※ 충북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2년 2.2조원으로 지자체 중 3위 (1위 서울, 2위 경기)
-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임
-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은 약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② 바이오 소부장 기업 육성

-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 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임
- 정부는 향후 10년간 계획된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1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30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바이오 소부장분야 슈퍼乙 기업을 육성할 계획임

③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적용

- 첨단바이오의 핵심 중 하나인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시켜 질병을 완치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그간 우리나라는 치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제한을 겪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원정치료에 나서는 국민들도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해 2월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치료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특히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 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임
-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오송 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주요내용 ('24.2 개정, '25.2 시행)>

- (연구대상 확대) 연구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 질환 등)을 삭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치료 도입)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신설

* (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 모집, 환자비용 청구 금지
(치료) 일반환자 대상, 환자비용 청구 가능

- (허용 조건) 의약품 품목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의 보편적 이용이 전제가 아닌 **특정 기술·기관·기간에 대한 제한적 허용**

- (대상 제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허용
- (임상연구 연계) 고위험·중위험 치료는 사전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 (치료계획 심의) 심의위원회가 치료계획 심의·승인
- (실시기관 지정) 복지부 지정 **재생의료기관**만 치료 실시 가능

- (비용 관리) 비급여이지만, 비용 수준에 대한 공적 관리 적용

- (재생의료기관) 치료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복지부장관)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
- (심의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시 비용에 대한 심사

- (안전 관리) 기존 임상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치료에도 적용하되, 치료의 특성을 감안한 추가 장치 신설

- (재생의료기관) 실시현황 기록·보관·보고, 이상반응 안전관리기관 보고
- (복지부장관) 계획과 다르게 실시 등 의무규정 위반시 처벌, 조사결과에 따라 치료 중지·치료대상자 보호대책 마련 등 조치
- (심의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를 받아 연구 및 치료의 진행상황 점검하고, 기관 IRB 및 안전관리기관 조사·감독 요청

(3)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

-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자원에 바이오·디지털 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충북 지역은 식품·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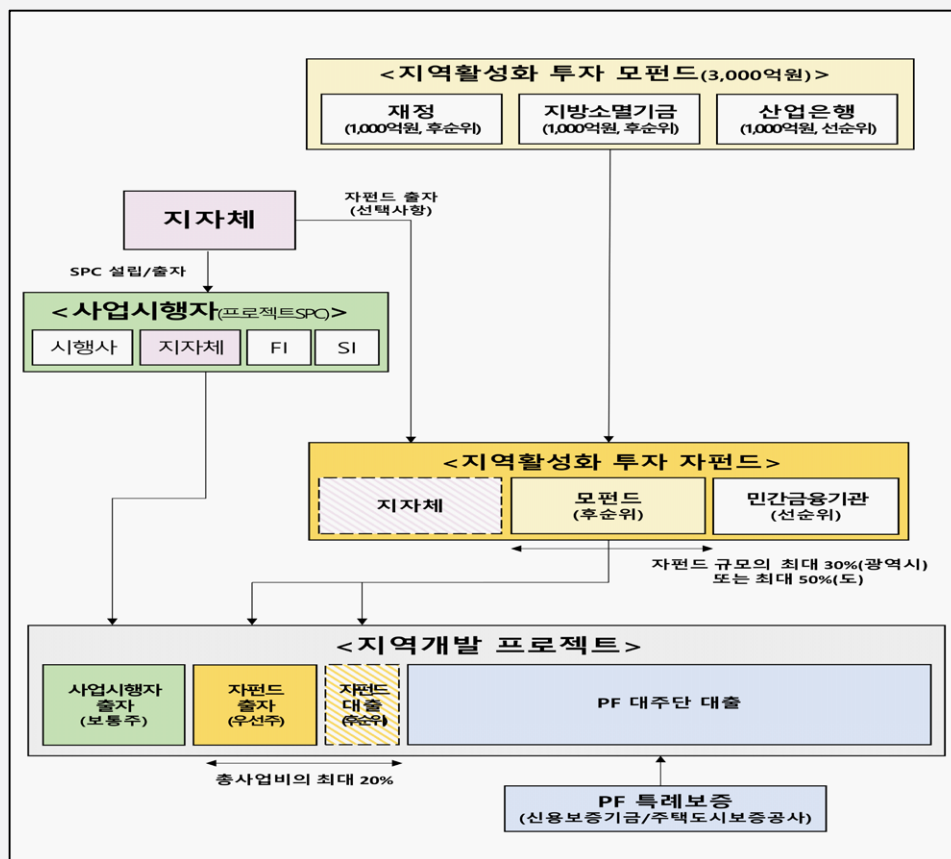
③ 숲길 복합 클러스터 조성

-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임

④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함
- 지자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⑤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

- 청주공항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프라 확대

- ▶ '97년에 개항한 청주공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370만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도 월별 이용객 수를 매년 갱신하고 있음
- ▶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증설하고,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는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임
- ▶ 또한,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임

-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 및 도로 확충

- ▶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57km 복선전철 구간은 선형 개량 및 청주공항역 이전·신설,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함
- ▶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임. 또한,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km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7월 설계에 착수하여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임
- ▶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임

-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

- ▶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
- ▶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임
- ▶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관계부처 합동
(국토부, 농림부 등)비상경제장관회의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

20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토지·농지규제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어온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 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1)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①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주요 내용

- (해제총량) GB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 인정

* 지역전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기존)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나열 → (개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거쳐 인정

- (환경등급)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GB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 면적만큼 100% 대체지(신규GB) 지정 조건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침개정)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국토부훈령) 개정 추진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GB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현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3.14~4.3) 중이며, 개정 시점(4월)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계획
- (사업선정)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 확정(12월)

* 선정절차: 수요조사 → 전문기관 사전검토 → 중도위 → 국무회의 → 최종선정(연내)

< 개발제한구역 관련 추진일정(안) >

	'24.3~4월		'24.5~9월		'24.10~12월
필요 절차	국토부훈령 개정 및 지자체 수요조사 준비	→	지자체 수요조사 및 국책연구기관 검증	→	중도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 확정
기간	2개월		5개월		3개월

③ 토지이용 규제혁신 주요 내용

- (규제완화)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 토지이용 규제완화 주요내용 >

- (정주여건 향상)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관리·녹지지역에 대안학교 허용,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제한 폐지
- (생산시설 투자) 계획관리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 건폐율 완화(40% → 70%),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공장 증축 허용, 사후규제 강화시 10년간은 공장 증축제한 완화

- (규제관리체계)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남은 규제는 신속철폐 ⇨ 국조실·국토부 주관, 각 부처 참여 T/F를 구성*하여 개선안 마련

* T/F 구성 : 과기부, 국방부, 국토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문체부, 산림청,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 참여

④ 토지이용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법령개정) 시설별 입지제한 및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3.20~4.29) 중이며, 5월내 개정 완료 계획

- (관리체계 구축) 범부처 규제혁신 T/F 구성(3.13, Kick-off 회의) 완료,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으로,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 마련 계획(6월)

(2) 농지이용 규제 개선 주요 내용

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 농지 위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1단계)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 부여(최초 7년 + 연장 9, 3+3+3)
* 「농지법」(’24.1월 개정 완료)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
- (2단계)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
* 「농지법 시행령」 개정

②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 정비

-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 후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지원
-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농지법령 개정)

③ 추진상황 및 성과

- (수직농장) 농지법령 등 개정 추진(’24.2월~) 및 부처합동 현장 방문
- (자투리 농지)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실시(’24.3월)
-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2~3월)

④ 향후 추진계획

- (수직농장)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 지속
- (자투리 농지) 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및 정비 계획 수립·공고(’24.4월)
-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 마련(’24.6월) 후 관련 「농지법」발의 및 같은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 착수(’24.8월)

관계부처 합동
(국토부, 농림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20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 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함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 초래,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됨. 농촌지역 소멸현상이 더욱 심각하고, 농업생산 위기, 농촌공동체 해체 및 인접 도시 연쇄적 쇠퇴 등 국가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

한편, 스마트기술 발달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됨. 또한, 쾌적한 환경, 도시대비 저렴한 비용 등으로 농촌 창업이 증가하고,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촌관광, 위케이션 수요가 증가됨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 추진키로 하며, 이는 농업 생산과 인구 유지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되는 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있음

① 청년층,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 농촌형 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활성화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농지·산지 활용 입지수요 충족

② 농촌공간 테스트 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빈집 재생을 통한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민관협력에 의한 위케이션·체류형관광 활성화

③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생활공간 재구조화 및 주민주도·민간협력·스마트기술 활용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농촌공간계획을 플랫폼으로 새로운 농촌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등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 관련 제도 및 규제 혁신키로 함

< 비전 및 전략 >

비전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		
목표	◇ 농촌 청년인구 22% 유지 : ('23) 21.4% → ('27) 22.0 ◇ 농촌지역 생활인구 · 관계인구 늘리기		
전략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대전환		
	전략1	전략2	전략3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농촌 체류 · 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주민 · 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원칙	자율, 연대 · 협력, 융복합, 규제혁신		
세부 과제	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② 생활인구 · 관계인구 창출
	• 청년, 혁신가, 기업 등 경제 기회 창출 • 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 • 스마트농촌 리빙랩 • 농촌경제 및 Agribiz+ 혁신 모델 구축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농 · 산지 활용 제고 • 농촌경제 및 Agribiz+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 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 •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 • 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 • 농촌 · 산촌 관광 활성화 • 공유형 숲오피스 · 치유관광 활성화 •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 •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 • 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 • 백만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
	↑		↑
	③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 주거 · 일자리 ·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 • 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 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 • 농촌 교육 · 문화 서비스 다양화 •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 • 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		•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공병원 지원 강화, 농촌 왕진버스 등 • 농촌돌봄마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자립적 공동체, 스마트기술 활용 등 • 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
추진 기반	농촌공간계획, 농촌소멸위험지수,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산업부, 국토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발표

20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2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발표함

정부는 서울의 '트윈힐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1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고,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만금,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제주하원 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선정시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 산단(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 제주도가 해당 과제를 규제 특례로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24.上)
- **(청주화장품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해당 산단 지역 내 화장품 제조시설의 입주 허용
- **(울산페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등)**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 추진*
* (現) 산단 내 공장 완공 전의 미활용부지 임차 불가 → (改) 동일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 등 용도로 임차 허용
- **(전국셀프스토리지)** 공유창고를 도심지 내 적법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공유창고가 「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인지 분류가 모호하여, 일부 지자체는 공유창고를 창고시설로 판단하고 도심지 내 설치·운영 제재

② 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

- **(서울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36개월 +α → 27개월, △9개월+α)
* 민자적격성조사 신속 검토(12개월+α → 9개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수시 개최(△2개월) 등
- **(포항수소환원제철 용지)**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신속 개최 등을 통해 매립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여 사업 조기 추진 지원(△6개월+α)
- **(홍성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간 단축(3개월 → 40일 이내)
- **(단양체류형 관광시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통해 재정·금융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우선심사(11개월 → 8개월) 및 수질오염총량 최우선 할당
* 총사업비 20% 규모의 자펀드 조성, 대출 특례 보증 등
- **(송도K-바이오 랩허브)** 지자체 공정기간 추가 단축 등을 통해 최대 15개월 완공기한 단축* 및 완공전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 국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행정절차 신속 이행(△10개월) + 지자체 공정기간 단축(△5개월)

③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 (광양이차전지 클러스터)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

* 기업전용 회선 설치 근거 마련, 회선설치로 감소되는 필수녹지를 대체할 녹지 추가 지정

- (울산장생포선(線) 부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철도부지 활용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폐지(~'24.下) 및 매각('25~) 추진
- (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 산단 내 전력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송전선로 설치경로를 신속 변경*하고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

* 최단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재포장 금지기간 등에 해당되어 계획된 기한('26.10월) 내 송전선로 설치 완료 불가 → 군산 우회 경로로 신속 변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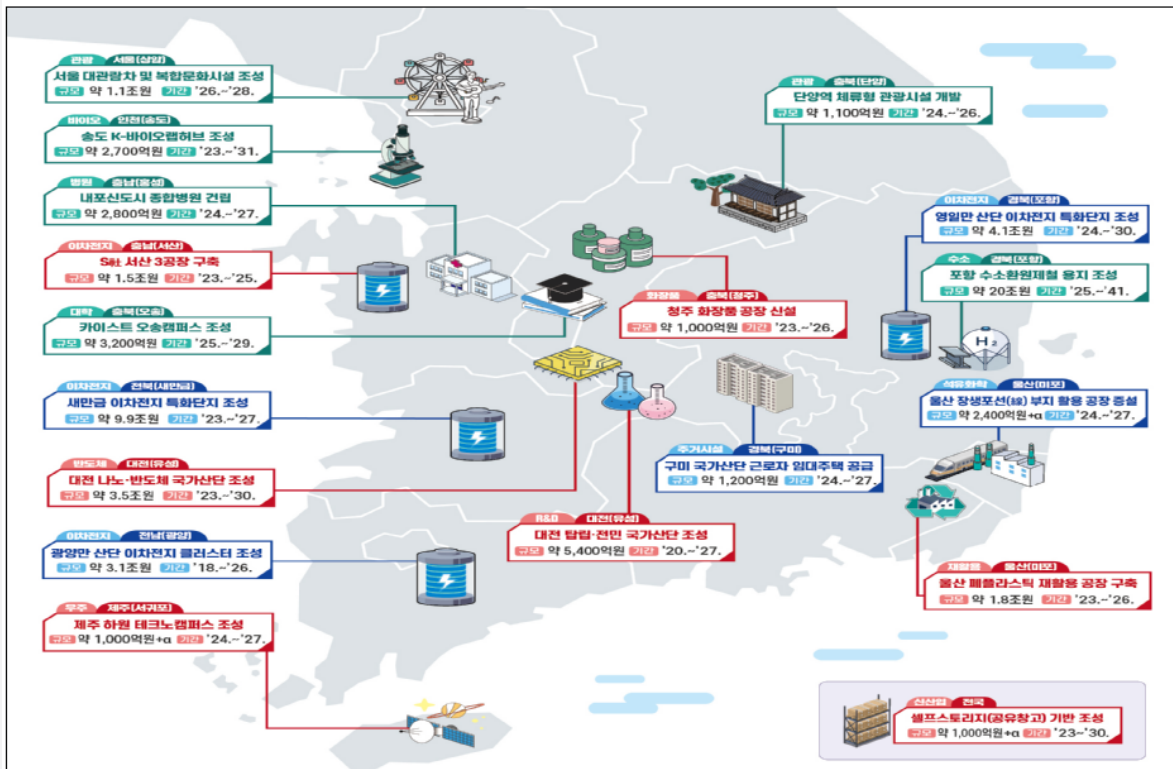
- (구미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구미산단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 지원('24.下 착공)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

➔ 18개 프로젝트, 최대 약 47.2조원 투자 규모

※ 애로 유형 : ①투자 관련 규제 개선, ②행정절차 Fast Track 추진, ③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체계도>

1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제주 서귀포 약 1,000억원+α '24~'27 ①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 기획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하여 신규 산단(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허용
	충북 청주 약 1,000억원 '23~'26 ②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 산단 내 화장품 제조시설의 입주 허용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한도 규제 완화
	울산 미포 약 1.8조원 '23~'26 ③ 울산 펄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건설업체 한시 입주 허용
	충남 서산 약 1.5조원 '23~'25 ④ S社 서산3공장(이차전지) 구축	▶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대전 유성 약 3.5조원 '23~'30 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 상향 조정하여 지역투자 지원 - 광역도시개발공사 300% → 350% - 기초도시개발공사 200% → 230%
	대전 유성 약 5,400억원 '20~'27 ⑥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	
	전국 약 1,000억원+α '23~'30 ⑦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	▶ 공유창고의 도심지 내 적절한 설치·운영 위해 법령 개정* * 공유창고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화(건축법 시행령)
2 행정 절차 Fast Track 추진	서울 상암 약 1.1조원 '26~'28 ①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36개월+α → 27개월, △9개월+α) * 민자적격성 조사(△3개월+α) + 민간투자심의위 수시 개최심사(△2개월) 등
	충북 오송 약 3,200억원 '25~'29 ②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	▶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 추진하여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사업' 조기 착공 지원
	경북 포항 약 20조원 '25~'41 ③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 중앙안전관리심의회 신속 개최 등을 통해 매립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여 사업 조기 추진 지원(당초 대비 △6개월+α)
	충남 홍성 약 2,800억원 '24~'27 ④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활용하여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간 단축(약 3개월 → 40일 이내)
	충북 단양 약 1,100억원 '24~'26 ⑤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 지역관광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한 재정·금융 지원 + 환경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 * 환경영향평가 우선 심사(11개월 → 8개월 △3개월), 수질오염총량 최우선 할당
	인천 송도 약 2,700억원 '23~'31 ⑥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	▶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랩허브 건축기간 단축(△15개월) + 완공 전에도 바이오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
3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전남 광양 약 3.1조원 '18~'26 ①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 산단 내 이차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기업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
	울산 미포 약 2,400억원+α '24~'27 ② 울산 장생포선(線) 부지 활용 공장 증설	▶ 현재 열차 운행이 중단된 철도부지를 용도폐지·매각하여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 허용(10여개 기업)
	전북 새만금 약 9.9조원 '23~'27 ③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 신속 결정, 지자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산단 내 전력 적기 공급
	경북 포항 약 4.1조원 '24~'30 ④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하여 산업부·지자체·한전 협업을 바탕으로 최소 4개월 이상 행정절차 단축 추진
	경북 구미 약 1,200억원 '24~'27 ⑤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 우수 인재 주거시설 공급 등 구미산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지원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국토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20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상승, 적정단가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기로 함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 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1) 적정 공사비 반영

① 공공공사 : 단가·물가 현실화

- (단가) 시공여건(입지·건물층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산재 예방을 위한 산안비 요율도 상향**

* 예시:(현행)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 → (개선)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실태조사('23)를 토대로 인상폭(15~20%) 결정

- (물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 되도록 반영기준 조정 검토*, 물가 미반영 등으로 유찰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즉시 추진

*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 마련

② 민간공사 :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

- (정비사업)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

* 물가·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을 구체화('24.1 마련)

- (일반사업) 건설분쟁조정위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신속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위탁 등 추진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① 공공공사 :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 (입찰제도 합리화) 설계보상비 현실화(공사비의 1.4%→1.2~2%), 불합리한 비용 전가(인허가, 준공식 비용 등)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

- (입찰제도 유연화)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유찰된 기술형 입찰(총 4,2조원, '23.1~'24.3)의 경우, 수의계약 진행 협의, 주요 공사 집중관리(재정집행점검회의 등) 통해 '24.上 내 3조원 이상 정상화 추진

② 민관합동 PF 사업 :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 지원

- (조정안 32건 후속조치) 공사비 조정(26건*)의 경우 LH 등 공공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원) 등 지원

* 사업계획 조정 6건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수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 (조정기능 강화) 조정위 상설 운영 및 법정 위원회로 격상(現: 훈령)

(3) 민간애로 해소**①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 (사업장 재구조화)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매입시 취득세 25% 감면)
- (지방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限) 및 중부세 합산배제 지원

② PF 유동성 지원 확대

- (주택 보증요건 완화) 저금리 대환 보증 신청기한 완화*(1년 한시),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도 폐지
- (비주택 보증 신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 기 내 조기 도입

③ 주택공급 조기화 및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25.1 → '24.下)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없이 연내 착공,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착공 조기화
- (규제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활용),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등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건설경기 회복 지원		
전략	세부 추진과제	
적정 공사비 반영	공공 공사	①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② 물가 상승분 적정 반영
	민간 공사	① 신탁방식 활성화 및 전문가 선제 파견(정비사업) ② 분쟁조정위원회 신속 조정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기술형 입찰	① 입찰제도 합리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② 입찰제도 유연화 (설계변경 경직성 완화 등)
	민관 합동 PF 사업	① 사전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 지원 ② 조정위원회 상설화·법제화 등 조정기능 강화
민간애로 해소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① LH, 리츠가 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 ② 리츠 활용한 지방 미분양 매입
	유동성 지원	① PF 보증요건 완화 ② 비주택 PF 보증 신설
	규제개선 부담경감	① 주택공급(3기 신도시) 조기화 ②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③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관계부처 합동
(노동부, 산업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20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에 있음. 정부는 4월 말까지 대진단을 집중 실시하여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현장 중심 밀착형 홍보로 대진단 참여 확대

- (1:1 밀착)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 1:1 밀착 참여 독려, 안전공단 전직원이 지원하는 ‘집중홍보주간’ 운영(3·4월 3주)

*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5.3만명), SNS 참여 전파 캠페인, 전기요금(300만개, 3~5월) · 건강보험 고지서(30만개, 4월) 등 도 안내에 적극 활용

- (1:多 확산) 현장 반응 · 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 · 전파하고, 방송 · 언론, 교육 · 설명회 등 가용홍보 수단 적극 활용

* 주요 언론 동행취재, KTX 객실 영상 홍보, TV · 라디오 홍보 캠페인 송출

- 경제단체, 자치단체 등과 함께 1:多 방식의 전국 중소기업 순회 교육·설명회 진행

* 경총(3.21~), 대한상의(3.27~), 서울시(3.6~) 등

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맞춤형 가이드 제작)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 · 단체와 협업하여 소규모사업장 대상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추가 제작

- 기존 50인 미만 대상 업종별 가이드(20종*)를 현장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소규모사업주의 수용도 · 실천가능성 등을 고려 최대한 간소화

*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별목업 등('22년 既 제작)

- (업종별 확산) 관계부처, 업종별 협 · 단체와 적극 연계하여 맞춤형 가이드 전파, 교육 ·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신속 확산

* 협업사례: 산업부 소관 업종별 협·단체 대상 간담회(2.22, 산업부·고용부 공동) 지방중기청-지방고용노동관서 협업 설명회(3.15~4월)

③ 정부지원 신속 연계 및 사업 품질 제고

- (신속 연계) 정부지원신청 기준 24시간 이내에 지원내용, 절차 안내 등 신속한 후속 상담 및 연계 지원 실시(유선 및 현장방문)

- (지원 모니터링) 사업장 중복지원 최소화 및 사업 신청 물량 모니터링, 필요시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 (품질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지원사업장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 및 수행기관 불시점검 병행*, 컨설턴트 역량 강화 전문교육 신설

* 부실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물량삭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 진행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
-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에 중점투자
- 성과 중심 재정운용, 지출구조조정 및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

2024-03-26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함.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 두터운 약자복지, ▶ 미래대비 체질개선, ▶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키로 함

- 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 ② **약자복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사회이동성 제고
- ③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
-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 확대

목표	민생안정, 역동경제 구현		
기본 방향	①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역동적 시장경제 기반 구축 ②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③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투자중점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 High5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 R&D 시스템 개혁과 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 콘텐츠·바이오헬스·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두터운 약자복지	✓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 수혜자별(노인·장애인·한부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 ✓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 및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미래대비 체질개선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청년 취업역량 강화, 주거·자산형성 지원으로 미래도약 뒷받침 ✓ 광역교통·문화·일자리·인재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 ✓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 AI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강군 육성 및 3축체계 고도화 ✓ 필수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 필수의료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	
재정운용혁신	현장·과제·성과 중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효율적 재정관리
	✓ 현장수요 반영으로 체감도 제고 ✓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동력 강화 ✓ 부처·지자체 협업 확대 ✓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 사업타당성 전면 재점검 ✓ 경직성 지출의 누수 관리 강화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 유사·중복사업 정비	✓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재원 간 칸막이 해소 ✓ 투자재원 다각화

특히 내년 예산안은 ①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 ②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③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형성, 일 경험 기회 확대, ④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지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 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 등에 적극 지원키로 함

< '25년 예산안 12대 분야별 투자중점 >

분 야	투 자 중 점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강화 양육부담 경감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취약계층의 자립·일자리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 의료·건강관리 강화
교육	■ 유보통합·늘봄학교로 교육돌봄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부담 경감 ■ 첨단·신산업 인재양성 및 지역대학 성과중심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	■ K-콘텐츠 해외거점 및 정책금융 지원으로 해외진출 확대 ■ 지역거점 기반 문화콘텐츠 및 관광자원 발굴·확산
환경	■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 예방, 첨단산업 용수공급 인프라 강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반도체·이차전자·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지원 ■ 원전재도약 위한 일감생태계 지원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보 확립 ■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SOC	■ GTX, 광역철도·버스를 차질없이 지원하여 광역경제생활권 조성 ■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등 교통격차 해소
농림수산	■ 농·어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 농·수산물 수급관리 및 재해대응 역량 제고로 경영안정 강화
R&D	■ 현장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R&D 투자 확대 ■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및 신진 연구자 성장 전폭 지원
국방	■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전력 확보 및 전략적 방산수출 지원 ■ 병봉급 인상·복무여건 개선 지속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외교·통일	■ 우리 기업·인력 해외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ODA 투자 ■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 확충 및 북한인권 개선·탈북민 지원
일반지방행정	■ 정보·데이터 결집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등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 기업·인재·생활환경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뒷받침
공공질서안전	■ 민생 침해범죄(마약·보이스피싱) 대응력 강화 및 피해구제 확대 ■ ICT기반 재난예방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9-27 시행예정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4항 신설, 제27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28 시행
-------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93조의10제2항 신설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9 시행
-------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공포 · 시행)됨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43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5 시행

청년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특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형태로 추가하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신청 기회를 확대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녀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득요건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추가하며,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거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9조제3항, 제19조제7항,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제25조제9항제2호 등)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5 시행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신생아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며,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청약하여 각각 당첨된 경우에도 그 중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의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3항 신설, 제23조제2항, 제35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27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별도 지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및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 (제10조의2 신설)

- 1세대는 조합원,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의 직계존속(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조합원의 직계비속 중 19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함
- 상속 또는 혼인으로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 및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지 않았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하나의 주택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1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중 상속 또는 혼인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고,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청절차 등 마련 (제13조의2 신설)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납부기간의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부유예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조합 등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 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③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합리화 (별표 제5호나목)

-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중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해당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그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공급가격을 뺀 금액을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및 범위를 합리화함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7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고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되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납부기간의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1호, 2024. 3. 26. 공포, 3. 27. 시행)됨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 제11조의2 신설,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등)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03-26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불수리 요건 및 직권말소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한의 고시 근거 마련 (제10조의11제3항)

-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한 (제10조의12제2항제2호)

-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③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결격사유 추가 (제10조의12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내의 금융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을 추가함

④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사유 추가 (제10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및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로 정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7. ~05.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변경계약체결 대상 외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시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 ② 산업단지 자산유동화가 허용됨에 따라 입주형태가 자가에서 임차로 변경되는 경우를 공장등록변경사항에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③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안 제31조제4항 신설, 별지 제30호의2 서식 신설)
- ④ 입주업종 정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안 제31조제5항 신설)
- 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단 구성을 규정함 (안 제44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 ⑥ 공장설립 인·허가의 원활한 온라인 처리를 위해 서식을 일부 변경함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등)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32, 팩스: 044-203-473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8. ~04.04.
---------	--------------------------	------------------------

전기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통지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공관리책임자 통지 세부규정 마련 (안 제12조6 신설)

-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행 규칙의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
- 문서, 팩스, 전자우편 및 법 제31조제6항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입력을 통해 통지

②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개정 (안 제16조2)

- 지방공기업이 중소기업자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가능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tel:044-203-3895)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9.
~05.08.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안 제7조)
- ②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상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하고자 함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tel:044-203-3928)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4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9.
~05.0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 (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②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 (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③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④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7, 팩스: 044-201-5601\)](tel:044-201-415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9.
~04.26.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안 별표2)
- ②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별표3)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60, 팩스: 044-201-5587\)](tel:044-201-3860)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9.
~05.08.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방법 삭제(안 제26조제4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tel:044-201-3860) (전화: 044-201-3860, 팩스: 044-201-5587)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6.
~05.07.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호, 2024. 1. 2. 공포)됨

이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정비 (안 제12조, 별표1의2)

-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정비
 - * (현행) 과징금 = 판매량 × 판매가격 → (개선) 과징금 = 2 × 판매량 × 판매가격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마련

②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 (안 제14조)

-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③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0조)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tel:043-719-2168) (전화: 043-719-2168, 팩스: 043-719-215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6.
~05.07.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

이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 등 마련 (안 제28조)**
 -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요건 및 승인 절차 등 마련
- ②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안 별표 8, 별표 13)**
 - 통관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명확화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8, 팩스: 043-719-215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7.
~05.08.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 공포·시행/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당 이익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안 제57조)
 - 과징금 금액 2배 상향 및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 ②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안 제32조, 제61조)**
 - 우수업소 제도 관련 규정 삭제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32, 팩스: 043-719-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7.
~05.08.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나, 현행법 상 행정제재는 없었음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제20246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마약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23)**

- 마약 관련 범죄 장소 등 제공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32, 팩스: 043-719-2000\)](tel:043-719-203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3.26.
~05.07.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기 곤란함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 개정이 요구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안 제20조의4, 제32조, 제39조 및 제45조)**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그 (국내)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안 제20조의4)
-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 불이행시 시정조치 명령 (안 제32조)
- 국내 대리인에게 문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 정비 (안 제39조)
-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 제45조)

② **동의를결제도 도입 (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를결제 도입 (안 제32조의2)
- 동의를결 미이행시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32조의3)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446, 팩스: 044-200-4466\)](tel:044-200-4446)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3.29.
~05.09.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제도, 동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2.20., 법률 제20321호)이 `24.8.21일 시행될 예정인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절차, 방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 열람·복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마련 (안 제1조의6 등 신설)
 -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열람·복사 절차 및 열람·복사 신청서식 마련
- ②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방법 등 마련 (안 제2조 등)
 - 시정명령의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정명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근거 마련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전화: 042-481-8181, 팩스: 042-472-1360)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3-27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판매 등을 위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인력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판매’는 납품업자등 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핵심적인 업무로서, 본래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과 고용에 부수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용부담 전가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일부 허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또는 고용된 인력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결정에 대하여 ‘파견’이라는 용어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파견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3-27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지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 주력 업무는 상품의 ‘판매업무’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위 규정 중 ‘파견’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적절한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
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3-27 발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총 410만여명 중 22.8%인 93만여명이 기간제근로자였음. 이는 직전 년도보다 1만 3천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기간제근로자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4조의 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03-27 발의

PF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제1항)
- ② 공제조합 사업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 ③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57조의2제1항)
- ④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시행사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5(금) 15:00	대한민국공공성실천 학술세미나	유정주 의원실, 한국공공사회학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4/1(월)	「THE 현안」 제5호 발간 - 독일과 미국의 청년 정치	국회도서관	
	4/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1호(2024-3호) 발간 - 독일과 미국의 청년 정치		
	4/3(수)	「World&Law」제2024-7호 발간 - 등록 동거혼, 결혼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까?		
	4/3(수)	「금주의 서평」제672호(2024-13호) 발간 - 도서명 : 공정감각 - 저자 : 나임윤경 외		
	4/4(목)	「현안, 외국에선?」제79호(2024-7호) 발간 -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4/4(목)	반도체 기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505호
	4/1(월)	「Futures Brief」제24-03호 발간 - 자원배분에 대한 기준과 인식 그리고 행복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26(화) 09:00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 2024 - 다시 짜는 글로벌 경영전략	정운천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3/28(목) 10:00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이자스민 의원실 외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3/25(월)	「THE 현안」 제4호 발간 - 2024 미국 방위산업전략	국회도서관	
	3/27(수)	「금주의 서평」제671호(2024-12호) 발간 - 도서명 :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 저자 : 테레사 뷔커		
	3/29(금)	「2024 NABO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 실질GDP, 민간정부소비 등 지출변수 전망 등	국회예산정책처	
	3/29(금)	「2024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6호 발간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3/25(월)	「NARS 브리프」제38호 발간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회입법조사처	
	3/26(화)	「이슈와논점」제2220호 발간 -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3/26(화)	특별 보고서 - 미래인재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3/27(수)	「이슈와논점」제2221호 발간 -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3/28(목)	「이슈와논점」제2222호 발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		
	3/29(금)	「NARS 현안분석」제318호 발간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		
	3/25(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91호 발간 -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25~03.3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26(화)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3/27(수)	소비재·유통업	소비재·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3/27(수)	해외 규제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3/28(목)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3/29(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3/29(금)	노동	직장 내 갈등 관리, 인지와 예방이 우선이다
3/29(금)	통상관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